

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하여

~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~

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(본사: 도쿄토 치요다쿠, 사장: 코보리 히데키, 이하 「당사」)는, 중국 선전시의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의 판매 회사인 선전시 쉬란(旭冉)전자 유한공사 및 선전시 쉬란(旭然)전자 유한공사(이하, 쉬란전자 등*)를 공동 피고로 하여, 2018 년 8 월 당사가 보유하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중국 특허권(특허 제 ZL200680046997.8 호)에 근거하여 쉬란전자 등이 판매하는 『단층 W-scope』 전지용 세퍼레이터 제품의 중국에서의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선전시 중급 인민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.

2020 년 4 월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당사 주장이 인정되어 쉬란전자 등에 대하여 상기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기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

※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의 중국에서의 판매 대리점